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목 차>

- 1.(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임종우
	담당부서 (과)	관광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태훈		연락처	044-203-2832
	과장	강석원		이메일	jwlim23@mail.go.kr

정책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등														
	2.규제조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6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7.규제내용	1) (신설)실내에 설치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충격흡수재의 소재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규정 2) (강화)승용물의 너비를 확대 3) (신설)승강장애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울타리 설치 4) (신설)수중모험놀이 구조물에 추락방지용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물망의 최대 크기 규정 5) (강화)공기주입식기구 장치의 주변 벽면 등과의 이격 기준 6) (강화)로프의 지름 감소 범위를 10%에서 7%로 변경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인원수 / 규모</th> <th>의견수렴방식</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매년 약 406개</td> <td>입법예고,</td> </tr> <tr> <td>유원시설업자</td> <td>업체</td> <td>협회 의견조회</td> </tr> <tr> <td>(관련정부기관) 시 도</td> <td>생략</td> <td>입법예고</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 규모	의견수렴방식	(피규제자)	매년 약 406개	입법예고,	유원시설업자	업체	협회 의견조회	(관련정부기관) 시 도	생략	입법예고		
	유형	인원수 / 규모	의견수렴방식													
(피규제자)	매년 약 406개	입법예고,														
유원시설업자	업체	협회 의견조회														
(관련정부기관) 시 도	생략	입법예고														
9.규제목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충격흡수재의 소재를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의무화할 경우 소재 단가의 인상으로 신규 유원시설업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바닥 등 전체 면적에 대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승용물의 너비 확대, 안전울타리 설치, 그물망 최대 크기 규정, 공기주입식기구 장치의 주변과의 이격 규정은 현행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신규사업자의 추가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이에 비해 위 사항의 규정으로 유원시설 이용객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편익이 그 비용을 초과한다고 할 것임.
기타	12. 일몰 설정 여부	○
	13.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5 유기기설·유기기구 허가전 안전성검사 기준</p> <p>I. 총 칙 (생 략)</p> <p>II. 공통기준</p> <p>1. 기본 요구사항</p> <p>1) ~ 23) (생 략)</p> <p><u><신 설></u></p> <p>2. 승용물</p> <p>1) ~ 10) (생 략)</p> <p>11) 성인이 타는 긴 의자의 <u>길이는 최소 400 m 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아동이 타는 의자의 길이는 최소 250 mm 이상이어야 한다.</u></p> <p>3. 승강장</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4 ~ 14 (생 략)</p> <p>III. 구조계산 및 설계 (생 략)</p> <p>IV. 완성기능검사기준</p> <p>1 ~ 2 (생 략)</p> <p>3. 구동장치</p> <p>3-1~3-8 (생 략)</p> <p><u>3-9 로프(고정식, 이동식)</u></p> <p>1) ~ 6) (생 략)</p> <p><u>7) 와이어로프 끝단의 고정부는 이완이 없고 현저한 녹 및 부식이 없어야 한다.<삭제></u></p>	<p>별표1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 허가전 검사 기준</p> <p>I. 총 칙 (생 략)</p> <p>II. 공통기준</p> <p>1. 기본 요구사항</p> <p>1) ~ 23) (생 략)</p> <p><u>24) 실내에 설치되는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의 충격흡수재의 소재는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u></p> <p>2. 승용물</p> <p>1) ~ 10) (생 략)</p> <p>11) ----- 1인당 너비는 450 m m ----- 긴 의자의 1인당 너비는 300 mm -----.</p> <p>3. 승강장</p> <p>1) ~ 6) (생 략)</p> <p><u>7) 지면으로부터 높이 0.6 m이상의 승강장에는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u></p> <p>4 ~ 14 (생 략)</p> <p>III. 설계검사기준 (생 략)</p> <p>IV. 완성기능검사기준</p> <p>1 ~ 2 (생 략)</p> <p>3. 구동장치</p> <p>3-1~3-8 (생 략)</p> <p><u>3-9 로프</u></p> <p>1) ~ 6) (생 략)</p> <p><u>7)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strand)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u></p>

현 행	개 정 안
<p>8) 와이어로프 파모는 <u>최초직경의 10% 이하</u>여야 하며 소선의 파모 길이가 <표 5>의 기준 이하여야 한다.<삭제></p> <p>4 ~ 8 (생략)</p> <p>9. 물놀이장치</p> <p>9-1~9-4 (생략)</p> <p>9-5 수중모험놀이(고정식, 이동식)</p> <p>1) ~ 4) (생략)</p> <p><신설></p> <p><신설></p> <p>10. 공기주입식기구 장치</p> <p>10-1 공기막장치, 공기막연결장치(고정식, 이동식)</p> <p>1) ~ 6) (생략)</p> <p>7) 공기막장치 주변의 울타리는 공기막장치로부터 1.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11. (생략)</p> <p><신설></p>	<p>10 % 이하이어야 한다.</p> <p>8) 지름의 감소가 <u>최초지름의 7 % 이하</u>이어야 한다.</p> <p>4 ~ 8 (생략)</p> <p>9. 물놀이장치</p> <p>9-1~9-4 (생략)</p> <p>9-5 수중모험놀이</p> <p>1) ~ 4) (생략)</p> <p>5) 수중바닥면에서 0.6 m 이상 높이의 구조물 평판에는 추락방지용 안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판높이가 2 m 미만인 경우 안전울타리의 높이는 0.85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p> <p>6) 구조물을 등반하거나 건너가는 용도로 설치된 그물망은 이용객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되어야 하며, 그물망의 매쉬(Mesh)는 89 mm 이내이어야 한다.</p> <p>10. 공기주입식기구 장치</p> <p>10-1 공기막장치, 공기막연결장치</p> <p>1) ~ 6) (생략)</p> <p>7) 외부인의 접근을 방지할 목적으로 안전울타리가 설치한 경우 공기막 장치 옆벽면과 1.8 m 이상, 입구측으로부터 3.5 m 이상 떨어져야 하고, 공기막장치 주변은 부상을 야기하는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한다.</p> <p>11. (생략)</p> <p>별표3</p> <p>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p> <p>I. 총 칙 (생략)</p> <p>II. 공통기준 (생략)</p> <p>III. 설계검사기준 (생략)</p> <p>IV. 완성기능검사기준</p> <p>1 ~ 10 (생략)</p>

현 행	개 정 안
	<p>11. 붕붕뽀틀 장치</p> <p>11-3 완충패드 및 네트</p> <p>1) ~ 5) (생 략)</p> <p>6) 완충패드 및 네트의 소재는 불연재로 또는 <u>난연재료로 하여야 한다.</u></p>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유원시설업 안전사고 지속 발생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발생일	사고명	피해발생
'17.8.5	롯데월드 플라이벤처 사고	이용객 70명 3시간여 고립
'17.2.4	동탄 뽀로로파크 철거현장 화재사고	4명 사망, 47명 부상
'16.2.14	롯데월드 회전목마 낙상사고	1명 부상
'13.4.26	전주 키즈카페 사고	1명 사망

- 특히 실내에 설치된 유원시설업의 경우 충격흡수재에 가연성 소재를 사용해 화재에 취약하지만 관련 규제가 없어 대책마련 시급
- 또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울타리, 주변 시설과의 이격 기준 등이 미비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함
- 민간에서는 안전관련 시설 투자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줄이려는 유인이 있어 정부개입이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화재 대비에 있어 도입하고자하는 '실내 설치 기구의 충격흡수재에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외 '실내외 설치 기구의 충격흡수재에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규제대안 검토

구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공기주입식기구 장치의 섬유에만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규정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타 기구의 경우 가연성재료 사용으로 화재에 취약
실내 설치 기구 소재 규정	-실내 설치 기구의 충격흡수재에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규정	-실외 설치 기구를 제외함으로써 비용 증가 최소화	-실외 설치 기구의 실내 이동 설치 시 제재 어려움

실내외 설치 기구 소재 규정	-실내외 설치 기구의 충격흡수재에 불연 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규정	-검사의 용이성	-모든 기구에 적용됨으로써 비용 부담이 큼
-----------------	--	----------	-------------------------

○ 승강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승강장 안전울타리 설치’의 ‘승강장 추락경고판 게재’ 규제대안 검토

구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추락방지 방안 없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추락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 상존
안전울타리 설치	-지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상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설치	- 안전사고 예방	-신규 설치 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추락경고판 게재	-지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상 승강장에 추락경고판 설치	- 최소비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이용객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

○ 수중모험놀이와 관련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울타리 설치 및 그물망 매쉬 크기 규정’의 ‘추락경고판 게재’ 규제대안 검토

구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추락방지 방안 없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추락사고 발생 위험 가능성 상존
안전울타리 설치 및 그물망 매쉬 크기 규정	-지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상 구조물 평판에 안전울타리 설치하고 그물망의 매쉬는 89mm 이내	- 안전사고 예방	-신규 설치 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
추락경고판 게재	-지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상 구조물 평판에 추락경고판 설치하고 그물망 매쉬 크기는 자율	- 최소비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이용객에게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 -그물망이 클 경우 사고 예방 효과 미흡

- 로프와 관련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지름의 감소가 최초지름의 7% 이하'와 현행유지안 검토

구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와이어로프의 마모는 최초 직경의 10%이하 유지	-기존 검사기준의 적용	-산업안전보건기준보다 완화된 안전기준 적용
지름의 감소 기준 강화	-지름의 감소가 7%이하 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 구조) 제1호 규정 준용으로 안전성 증대	-와이어로프 교체 주기가 짧아짐

- 공기주입식기구 주변 울타리 또는 장애물과 관련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옆벽면과 1.8m 이상, 입구측으로부터 3.5m 이상 이격'과 현행유지안 검토

구분	주요내용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공기막장치 주변의 울타리는 1.5m 이상 유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공기막장치 주변에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도 반드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국제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
이격거리 강화	공기막장치 옆벽면과 1.8m 이상, 입구측으로부터 3.5m 이상 유지	-EN14690(유럽산업표준)의 4.2.8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외부인 접근방지를 위한 안전울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	-추가적인 공간 확보 필요의 경우 발생 가능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국무조정실,	키즈카페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회의	-유기시설 또

<p>국민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p>	<p>(17.5.15) -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p>	<p>는 유기기구 충격흡수재 방염규정 보 완 등</p>
----------------------------	---	--

3. 규제목표

- 유기사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규정으로 화재 사고 예방
 - 일정 높이 이상의 승강장 등에 안전울타리 설치로 추락사고 예방
 - 수중모험놀이 그물망 크기, 승용물 너비, 공기주입식기구의 이격 거리 및 로프의 마모 기준 규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충격흡수재의 소재를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의무화할 경우 소재 단가의 인상으로 유원시설업자의 설치 비용 증가가 예상됨. 그러나 바닥 등 전체 면적에 대해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며,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충격흡수재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소재를 규정함
- 승용물의 너비 확대, 안전울타리 설치, 그물망 최대 크기 규정, 공기주입식기구 장치의 주변과의 이격 규정은 현행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법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임. 안전관리 규정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현행화 차원에서 규정함.
- 이에 비해 위 사항의 규정으로 화재예방 등 유원시설 이용객(연간 99,327,305명*)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할 것임. *출처: 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설정 여부	원칙허용· 예외금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국제 기준 정합성

-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미국 규격(UL*) 및 국제 표준 규격(ISO**)에 부합함.

* UL 94 Test for Flammability of Plastic Materials for Parts, Device and Appliance

** ISO 9772 발포플라스틱-소형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 (승강장 및 수중모험놀이 안전울타리 설치) EN 1176-1 Playground equipment and surfacing-Part:General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에 부합함
- (공기주입식기구 주변 이격) EN 14960 Inflatable play equipment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에 부합함

- 일몰설정 여부

설정. (* 재검토기한을 2021년 8월 31일까지로 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미국 규격(UL*) 및 국제 표준 규격(ISO**)

* UL 94 Test for Flammability of Plastic Materials for Parts, Device and Appliance

** ISO 9772 발포플라스틱-소형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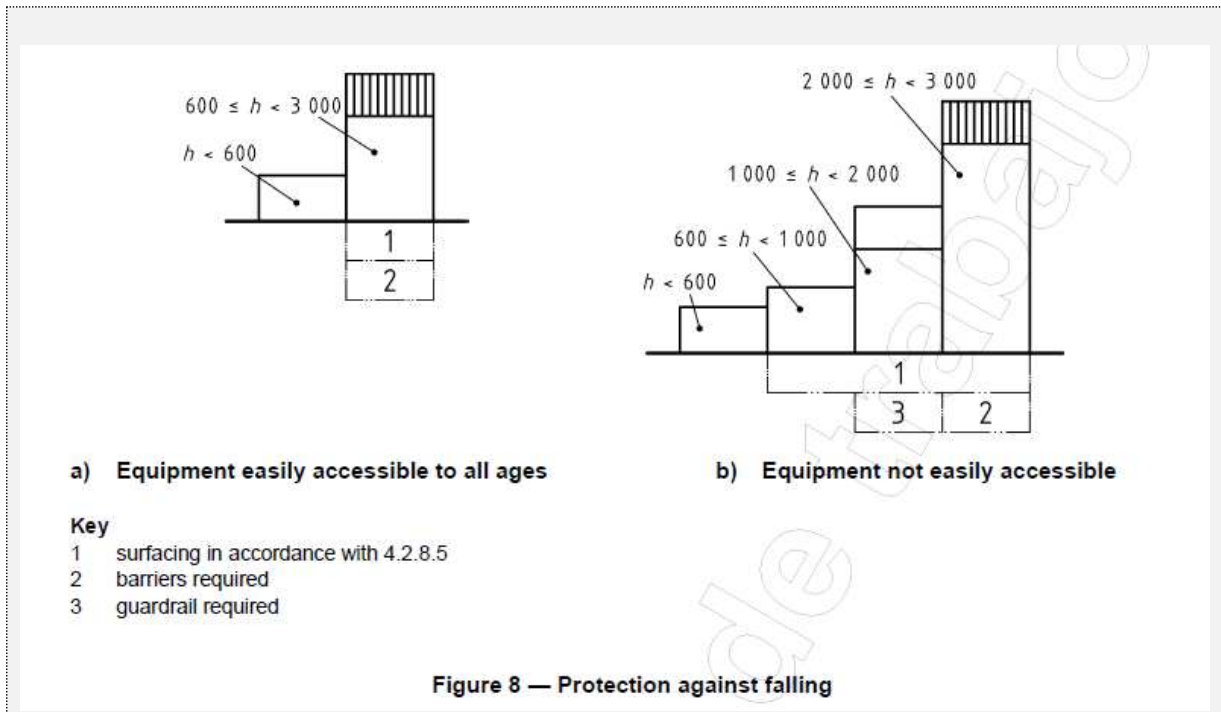
- (승강장 및 수중모험놀이 안전울타리 설치) EN 1176-1 Playground equipment and surfacing-Part:General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4.2.4 Protection against falling

4.2.4.1 Types of protection

Figure 8 shows the appropriate type of protection with different heights of equipment.

When installed on ramps or stairs, handrails, guardrails or barriers shall commence at the lowest position on the ramp or stairs.



- (공기주입식기구 주변 이격) EN 14960 Inflatable play equipment - Safety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4.2.8 Siting

The inflatable shall be sited well away from possible hazards such as overhead powerlines or other obstacles with hazardous projections (e.g. fences and/or trees).

The inflatable shall not be erected on a site with more than a 5 % slope in any direction.

The site shall be cleared of debris and/or sharp objects on, or embedded in, the surface.

If, for crowd-control purposes, a perimeter fence is used, it shall be at least 1,8 m from walled sides and at least 3,5 m from open sides. A gateway shall be 1,0 m wide (see Figure 12).

○ 타법사례

-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사례

제1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준

VIII. 폐쇄형 놀이기구의 안전요건

4. 안전요건

4.2.5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구에 대한 방염시험은 다음에 따른다.

4.2.5.1 딱딱한 자재(튜브, 판 등), 속이 빈 불풀 공은 UL94의 HB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4.2.5.2 발포된 불풀 공, 파이프 스펀지 패딩에 사용되는 스펀지 패딩은 UL94의 HBF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4.2.5.3 스펀지 패딩은 KSM ISO 9772-HBF등급에 적합하여야 한다.

- (승용물 너비)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사례

도시철도차량 표준규격

1.1.1.1. 객실의자

1) 객실의자는 1인당 점유면적을 어깨폭 0.43m~0.46m, 앞은 방향 0.8m를 기준으로 하며, 승차감 및 미려도 등이 우수하고 경량재질을 적용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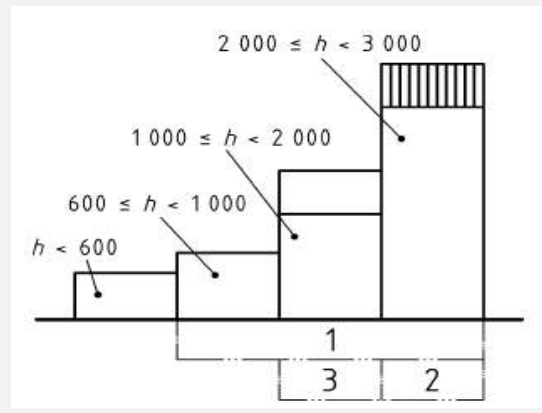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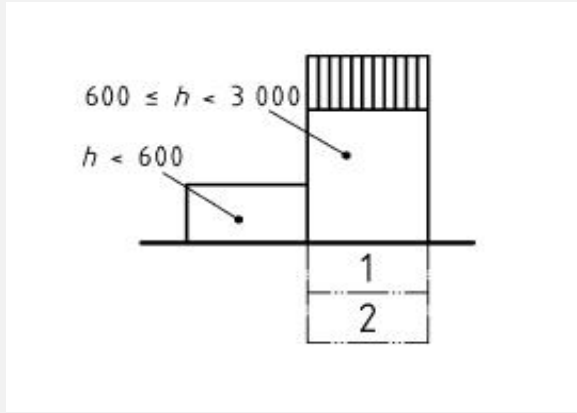
- (승강장 및 수중모험놀이 안전울타리 설치) 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사례

4. 안전요건

4.1 하강에 대한 보호

4.1.1 보호형태

[그림 6] 은 기구의 높이에 따른 적절한 보호 형태를 명시하고 있다. 난간, 보호난간 또는 울타리를 경사로나 계단에 설치 할 때는 경사로나 계단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부터 설치되어야 한다.



a) 모든 나이 사용가능한 기구(36개월 미만 포함) b) 36개월 미만의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기구

1. 충격흡수표면처리 구역 조건
2. 울타리 조건
3. 보호난간 조건

단위: mm

[그림 6] 하강에 대한 보호 형태

- (로프 검사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달비계의구조) 사례

제63조(달비계의구조)

제1호 다목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 (수중모험놀이 그물망 크기) 그물망에 대한 타 규정사례는 없으나, 행정안전부 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유사 사례를 참조함

4. 안전요건

4.2.4.4.2 울타리 구조

플랫폼과 울타리 하단부 사이의 개구부와 울타리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있는 개구부는 탐침봉 c (89 mm)가 통과해서는 안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의 경우, 타법에서도 이미 폭넓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개정 취지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으로 판단.
- 승용물의 너비 확대, 안전울타리 설치, 그물망 최대 크기 규정, 공기주입식기구 장치의 주변과의 이격 규정은 대부분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규제의 현행화로 이에 따라 준수 가능성도 높음.

○ 규제 차등화 방안

-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규제 차등화 적용 부적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신규 유원시설업자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준수 여부 확인이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 재정 소요 없음.
- 신규 유원시설업자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를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준수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재정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6.상반기) 개정 주요사항 내부검토
- ('16.5월 ~'17.4월) 유원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고시 개정 연구용역
- ('17.5.15) 이해관계자 협의(키즈카페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회의/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식약처)

2. 향후 평가계획

- (안전성검사 대상) 신규 유원시설업자의 허가전 검사 시 관련 규정 사항 준수여부 확인
- (확인검사 대상) 신규 유원시설업자의 최초 확인검사 시 관련 규정 사항 준수여부 확인
- (유원시설업계 의견 청취) 유원시설업협회 간담회,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교육, 기타유원시설업사업주 교육, 지자체 유원시설업 담당공무원 교육, 유원시설 정기점검 시 개정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17.9월~)

3. 종합결론

- 충격흡수재의 소재를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의무화할 경우 소재 단가의 인상으로 신규 유원시설업자의 일부 설치 비용 증가가 예상되나, 화재 예방을 위해 기구의 충격흡수재에 한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항이며,
- 승용물의 너비 확대, 안전울타리 설치, 그물망 최대 크기 규정, 공기주입식기구 장치의 주변과의 이격 규정은 현행에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최소한의 규정 사항으로 제도 현행화의 성격이 강함.
- 동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화재예방 등 유원시설 이용객(연간 99,327,305명*)의 안전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고 할 것임. *출처: 2015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87.2		487.2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487.2		487.2
기업순비용		487.2	연간균등순비용	61.26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등>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설치비용
설명	기존: 공기막기구(에어바운스) 소재에만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규정추가: 실내에 설치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충격 흡수재 소재를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규정총: 기존 가연성 소재 대비 비용 증가
세분류	유원시설업자
활동제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설치 비용
비용항목	원재료
비용	487,200,000
활동비용 특성	일시적
산식	원재료구매 [(변경 원재료 단가(130000)-기존 원재료 단가(100000)) X 연간 구입단위(40) X 피규제자 수(406)]
근거설명	-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평균단가 : 130,000원 (일반 가연성재료 단가 대비 최대 30% 상승) * 일반 가연성재료 평균단가 : 100,000원 ** 기존 가연성재료 충격흡수재는 규제 사항이 아니며, 업체의 자율적인 기본 시설에 포함되므로, 기존 비용에서 제외 - 업체당 소요 수량(예상) : 40 제곱미터

직접편익 :

(정량)제목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등
금액	
산식	없음.
근거설명	

□ 간접비용 :

(정량)제목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등
금액	
산식	없음
근거설명	

(정성)제목	
분석	
근거설명	

□ 간접편익 :

(정량)제목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등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사용 등
분석	1) 유원시설업체 측면- 유원시설업 내 안전사고 발생감소로 인한 업체 배상금(보험금) 부담 완화 (화재사고 예방, 추락사고 방지, 공기막장치 이용 중 충돌사고 예방 등)- 유원시설업 안전성 향상으로 이용객 신뢰도 향상 및 방문 증가2) 이용객 측면- 승용물 너비 확대로 편의성 증진- 화재예방 등 이용환경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근거설명	